

현행	개정안
<p>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감사 또는 조사는 <u>감사 또는 조사위원회</u>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p> <p>제11조(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u>감사 또는 조사위원회</u>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제12조(제척과 회피) ① - ② (생략)</p> <p>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u>감사 또는 조사위원회</u>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p>	<p>금지 시키거나 <u>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u>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②<u>의회에서 증언. 진술한 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u></p> <p>③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p> <p>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 -----<u>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u>----- ----- -----</p> <p>제11조(공개의 원칙) ----- -----<u>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u>----- -----</p> <p>제12조(제척과 회피)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u>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u>----- -----</p>

【 4 】 양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발의년월일 : 1994. 7. 29.

발 의 자 : 한상익의원의외 1인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1994. 7. 6 대통령령 제14.317호) 됨에 따라 의원에게 지급하는 일비 및 여비를 법 시행령에 맞게 인상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여비의 종류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식탁료를 삭제함 (안 제5조제1항)

나. 의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를 종전에는 30,000원이던 것을 50,000원으로 상향 조정함. (안 제6조)

다. 국내여비 지급단가를 인상 조정함 (안 별표 1)

양주군 조례 제 호

양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양주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식탁료”를 삭제한다.

제6조중 “30,000원”을 “50,000원”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2)중 숙박비란 및 식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3)을 삭제한다.

구 분	숙 박 비	식 비
의장. 부의장	130	107
	90	78
	72	58
	62	49

의 원	114	81
	74	59
	55	44
	46	3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국내여비지급기준표 (제7조제1항 관련)

지 급 기준액 구분	철 도 운 임	선 박 운 임	항 공 운 임	자 동 차 운 임	현 지 교통비 (1일당)	숙 박 비 (1일당)	식 비 (1일당)
의 장·부 의 장	1등급	2등 정액	정 액	정 액	6,500	20,700	11,000
의 원	2등급	2등 정액	정 액	정 액	6,500	16,200	10,500

비고 : 1. 의회 소재지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 (군내에서의 출석 및 여행을 말한다) 이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한다.

2. 철도운임 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 2등급은 새마을호 보통실을 가리키며, 당해 철도운임 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안
제5조(여비의 종류) ①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국내 여행을 할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현지 교통비, 숙박비, 식비, 식탁료로 구분한다.	제5조(여비의 종류) ① ----- ----- ----- -----현지 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제6조(일비지급기준) 의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는 출석일수 1일에 30,000원으로 한다.	제6조(일비지급기준) ----- -----50,000원-----.	제8조(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시의 여비) ①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에 있어서는 별표 3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서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 이라 함은 의정부시 시내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삭 제)

【 5 】 양주군의회의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발의년월일 : 1994. 7. 29.

발 의 자 : 김재현의원외 1인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1994. 7. 6 대통령령 제14.317호)됨에 따라 현행 회의규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